

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성적평가 결과

배치기관명 :

평가대상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평가 순위	소 속(팀)	성 명	평가		가·감점(b)		합 계 (a+b)
			등급	점수 (a)	가점	감점	

평가위원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서 명	일 자

※ 작성요령

-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.
-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.
 -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.
 - 동일평가등급안에서 직근 평가점수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.
 - 동일평가등급안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.
 -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직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.
-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(다만, "가"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가"의 비율은 "양"의 비율에 가산함).

등급(비율)	평가가능점수
수 (2할)	90점 이상 100점 이하
우 (4할)	70점 이상 90점 미만
양 (3할)	55점 이상 70점 미만
가 (1할)	55점 미만

※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,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여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.

- 가감·점은 별지 5서식에 의한 가·감점을 기재
- 동점자의 순위결정
 -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
 - 동일 보조기관(과, 팀 등 최소단위)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
 - 장기 근무한 자